공 시 송 달 공 고

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」제3조 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(과징금)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, 우편 반송(폐문부재 등)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5. 5. 13.

천 안 시 서 북 구 청



1. 공고기간 : 2025. 5. 13. ~ 2025. 5. 26. (14일간)

2. 공고장소 : 전국 시·군·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

3. 공고내용

처분의 제목	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」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			
당사자	성명(명칭)	임*수		
	주 소	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*로 ***-**, ***호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시실	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」제3조 제1항 위반 과징금 부과			
처분내용	○ 과징금 : 420,334,482원			
부동산의 표시	○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***, ***호 외 30개호			
법적근거	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」제3조 및 제5조			
기타문의	기관명	서북구청	부서명	민원지적과
	주소	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75	전화번호	041-521-6132
	전자우편 주소	1q2s3c@korea.kr	팩스번호	041-521-6139

4. 기타 사항 : 공고 기간 만료 시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(송달의 효력 발생)에 따라 본 서류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.